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지원 격차와 정책 과제¹⁾

Differences in Independent Living Services between Child and Youth Protection Systems and Policy Implications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호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상이하며, 그로 인한 서비스의 분절, 공백, 격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보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도 체계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는 없었으며, 특히 퇴소 또는 보호 종료 전 자립 준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 경험,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하여 자립 지원의 체계 간 격차를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자립 준비 지원과 서비스에 격차가 있고 자립 준비도 수준도 아동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자립 지원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통합적 보호·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로 구별되어 분리·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로 인한 보호서비스

의 분절과 공백, 체계 간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류정희 외, 2018; 박세경 외, 2016; 박진규, 2008; 정영철 외, 2014),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

1) 이 글은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이상정 외, 2020)를 바탕으로 작성함.

호체계 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2020).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군·구 단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²⁾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배치하여 아동보호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³⁾을 통한 가정 외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시·군·구에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팀⁴⁾을 배치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의 공적 책임성과 서비스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2020년도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전달체계가 별도의 모형으로 구축되고 있어 효율성과 연계·통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자에게서 이탈하여 가정 외(밖)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개별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보호체계 진입에서부터 자립 지원,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서는 보호 및 위기 아동·청소년 예방과 발굴, 보호조치, 보호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를 총괄하는 공공 체계의 연계·통합 방안이 필요하며, 이때 체계 간 서비스의 형평성 및 연속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보호 또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격차 및 형평성 논의와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어 왔지만(류정희 외, 2018; 박세경 외, 2016; 박진규, 2008; 정영철 외, 2014), 가정 외(밖) 보호서비스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보호 체계 간 비교 연구 및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퇴소 또는 보호 종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 기간 중에 자립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과정에서의 자립 준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지원 격차를 파악하고, 체계 간 차이를 보호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체계의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 경험,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여 비

2) 「아동복지법」 제2절 22조 3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그동안 인간의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이 수행했던 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②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위임.

3)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16조의 2에 명시된 ① 보호조치(가정위탁, 입양, 시설) 필요 아동 대상 보호 계획 수립, ② 보호조치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③ 보호 종결 후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같이 아동보호팀에 배치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달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형태임.

4) 위기 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총괄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 체계(전담공무원 2인+사례관리사 2~3인으로 구성)로 ① 지역사회 유관 기관 네트워크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② 지역 내 위기 청소년 현황 조사 및 발굴·연계 강화, ③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사후 관리 강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6ede93552fbc4378bd61562f9e5b3c94.hwp&rs=/rsfiles/202105/>).

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보호 및 자립 서비스의 연속성과 체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가. 자립 준비 대상 현황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자립 준비는 사실상 가정외(밖)보호의 시작과 동시에 일상생활 기술, 자기 보호 기술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만 18세에 도래할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자립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만 15세(아동복지법 제39조)이다. 따라서 만 15~18세, 그리고 연장 보호를 받는 만 18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 준비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립 준비 대상 보호아동은 2018년 기준으로 1만 1,565명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당해에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

고 있던 아동이 약 2만 6천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전체 보호아동의 44.6%에 해당된다.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보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전체의 59.6%로 나타나 가장 많고 그다음은 양육시설(31.4%), 공동생활가정(8.9%) 순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보호 유형별로 아동의 자립 준비 여건이 상이하고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 준비가 필요한 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자립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서비스 수혜 경험이 양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경향이 관찰되고, 위탁가정 역시 위탁 유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19a, p. 262).

쉼터 중심의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 지원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자 3만 2,402명 중 15세 이상 자립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52.4%(1만 6,975명)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자립 준비 대상으로 분

표 1. 아동보호체계 자립 준비 대상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25,955)	보호 유형*					
		양육시설 (11,100)		공동생활가정 (2,872)		가정위탁 (11,983)	
		16세 이상	연장 보호	16세 이상	연장 보호	16세 이상	연장 보호
자립 준비 대상 아동 (2018년)	11,565	3,092	545	944	88	6,896	-

주*: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는 연 나이 기준으로 제시함. () 안은 전체 보호아동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 22.

표 2. 청소년보호체계 자립 준비 대상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32,402)	만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만 16~18세 고교생 추정치	대학 재학 만 19세 이상	기타 (확인 불가 등)
자립 준비 대상 청소년 (2019년)	16,975	4,988	6,826	5,161	0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 <표 2-5>.

류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16~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6,82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학교 재학 또는 15세 학교 밖 청소년이 4,988명이다. 또한, 「민법」상 성인이며 아동보호체계의 연장 보호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이 5,161명으로 30%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15세가 되면 자립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는 단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시설별로 자립생활 지원, 자립 관련 상담 정도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이상정 외, 2020).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전체 사업비의 20% 수준) 중 일부가 자립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산 자체도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자립 준비 지원 또한 그 내용과 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상정 외, 2020).

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대상아동은 부모의 학대(40%), 부모의 이혼(29%)과 미혼 부모 및 혼외자(29%)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19). 시설과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보호아동은 18세 혹은 연장 보호 후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12.2년(표준편차 = 5.7년)을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19b, p. 98).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면 가족 문제가 11만 건 이상으로 60% 이상을 나타내, 가족해체 및 가족 갈등 등 가족 내 문제로 인해 원가정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주된 사유임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 이는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과 마찬가지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가정 내 문제로 인해 보호체계에서 대리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자립 과정에서 부모나 원가족에게 지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

표 3.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주요 문제

(단위: 명, 건)

계	입소자의 주요 문제*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활동·생활 지도	성	기타
18,242	11,081	3,062	2,665	440	374	174	163	283

주*: 지원 사항과 입소 상담 제외.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 재구성.

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청소년 2만 3,876 명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였는데 이 가운데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약 46%(10,974명)로 가장 많았고, 취업·창업 등의 자립 퇴소는 전체의 1.5%(367명)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쉼터를 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퇴소 후 아동·청소년은 놓여 있는 자립 과정의 위기 내용과 경험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를 경험하였고(이상정 외, 2019a;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장정은, 전종설, 2018; 장주현, 김정애, 2015; 장혜림, 정익중, 2017),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은, 전종설, 2018; 장혜림, 정익중, 2017; 정문진, 김수정,

2016).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체계는 다르지만,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 이유와 경로, 자립 과정의 위기 경험은 유사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 경험과 자립 준비도

다음으로 보호 환경과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보호체계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자립준비 경험과 자립 준비도를 비교·분석해 보았다.⁵⁾ 공동생활가정 215명, 중장기 청소년쉼터 147명의 응답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⁶⁾ 평균 연령은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이

5)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주로 10대 중·후반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7~10명을 3~4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보호함.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비해 비교적 낮은 나이에 보호를 시작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보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이나 가구 단위의 위탁가정보다 보호 환경이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유사하여 비교 집단으로 선정함.

17.7세로 평균 17세인 공동생활가정보다 약간 높았으며, 특히 만 19세 이상의 연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가정 외 보호 총기간은 3.1년으로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의 8.5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쉼터 보호 기간이 단기 또는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학 상태는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청소년쉼터의 휴학 또는 중퇴 비율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립 준비 경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에 기초하여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등의 전체 8개 영역 가운데 최소 1개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응답자는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모두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참여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이상정 외, 2020, pp. 159~160). 한편,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매뉴얼

표 4.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지표	청소년쉼터 (N=147)	공동생활가정 (N=215)	χ^2
자립지원관 이용	29.9	40.0	3.845
직업 교육 또는 훈련	72.1	66.0	1.487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44.9	54.0	2.864
용돈 지원	72.8	95.3	37.326***
장학금	37.4	75.8	53.738***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66.0	54.0	5.220*
의료서비스	89.1	93.5	2.196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81.6	80.9	0.028
다담씨앗통장	19.7	81.9	137.230***

***p < .001, **p < .0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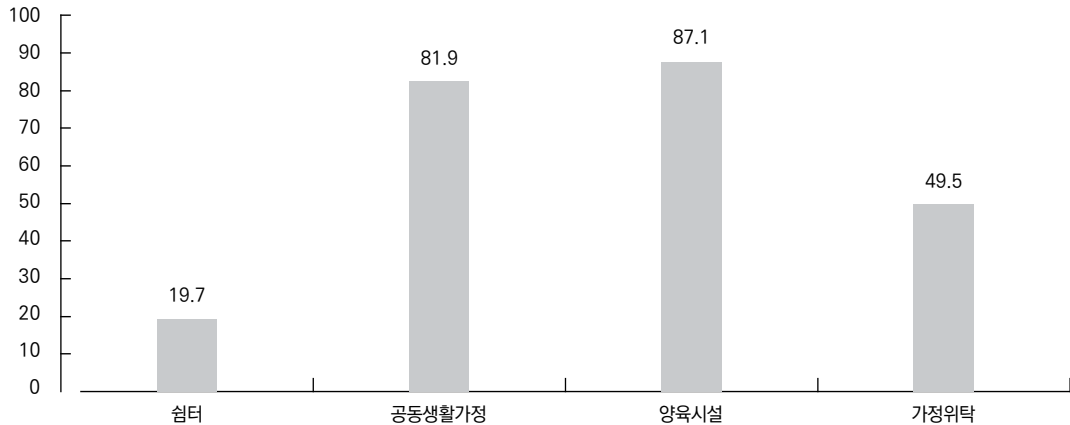
주: 1) 각각의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함.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1. <표 4-30> 재구성.

6)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는 '이상정 외(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 지원 정책 연구, pp. 121-124' 참조.

그림 1.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단위: %)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2. [그림 4-1].

이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체계 아동이 경험한 프로그램과 다르며, 응답자가 경험한 프로그램의 특성과 내용은 기관별·개인별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지원 관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직업 교육·훈련 경험,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그리고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쉼터 보호아동·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공동생활가정보다 낮았다. 특히 용돈 지원, 장학금,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소 후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는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은 아동보호체계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가정위탁(49.5%)의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상정 외, 2020, p. 162).

나. 자립 준비도

성인기 진입의 핵심 발달 과업인 취업을 위해서는 사적·인적·사회적 영역에서의 자본(capita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영역의 분류는 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와 핵심 발달 과업을 포괄하고 있으므로(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사적·인적·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도를 살펴보았다.

1) 사적 자본 영역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사적 자본 영역에서의 자립 준비 수준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지표에서 청소년보호체계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점

표 5.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준비도

(단위: 명, 점)

지표	청소년쉼터(N=147)	공동생활가정(N=215)	t	
	평균(SD)	평균(SD)		
삶의 만족도	6.8(2.3)	8.5(2.1)	-7.303***	
주관적 웰빙	행복	5.7(2.3)	7.1(2.1)	-6.251***
	걱정	5.2(2.6)	3.8(2.8)	4.928***
	우울	4.2(2.9)	2.5(2.6)	5.805***
	삶(생활) 만족도	5.8(2.4)	7.0(2.2)	-5.139***
	유데모니아	5.7(2.3)	6.8(2.4)	-4.262***
회복탄력성	91.5(15.6)	100.1(16.3)	-4.991***	
자기효능감	10.1(2.7)	10.9(2.6)	-3.006**	

***p < .001, **p < .01, *p < .05.

주: 각 지표 총점의 평균을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함.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3. <표 4-33>.

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삶의 만족도는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6.8점으로 공동생활가정의 8.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행복과 삶(생활) 만족도, 유데모니아의 긍정적 지표 수준은 낮은 반면, 걱정과 우울의 부정적 지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지표에서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은 공동생활가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적 자본 영역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 자본 영역에서의 자립 수준과 관련해서는 재학 상태, 주관적 학업 성적,

자격증 준비 경험, 희망 진로를 살펴보았다. 우선, 재학 상태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63.9%로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청소년 94.9%보다 31%p 낮게 나타난 반면, 휴학 또는 중퇴는 12.9%로 공동생활가정(2.8%)보다 약 4.6배 높았다. 또한, 주관적 학업 성적⁷⁾은 공동생활가정이 4.8점으로 중장기 청소년쉼터 4.6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 관련 자격증 준비 경험 여부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22.4%, 공동생활가정 21.9%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대해

7) 11점 척도(0: 매우 못함, 5: 보통, 10: 매우 잘함)

표 6.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준비도

(단위: 명, 점)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x ²
		N	평균(SD), %	N	평균(SD), %	
재학 상태	재학 중	94	63.9	204	94.9	58.209***
	휴학·중퇴	19	12.9	6	2.8	
	기타	34	23.1	5	2.3	
주관적 학업 성적		94	4.6(2.6)	203	4.8(2.4)	-0.894
자격증 준비 경험	유	33	22.4	47	21.9	0.018
	무	114	77.6	168	78.1	
진로	취업	35	48.6	49	29.7	13.205**
	2~4년제 대학	23	31.9	95	57.6	
	모름	14	19.4	21	12.7	

***p < .001, **p < .01, *p < .05.

주: 주관적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평균을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고, 재학 상태, 자격증 준비 경험, 진로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함.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7. (표 4-34).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은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48.6%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2명 중 1명 이상이 2~4년제 상급 학교 진학(57.6%)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은 향후 진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9.4%로 12.7%인 공동생활가정보다 6%p 이상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자본 영역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원가족과의 교류, 사회적 기술,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분석하였다. 원가족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류가 있다고 응답한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은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85.7%로, 공동생활가정 87.1%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

회적 지지 수준은 공동생활가정 19점, 청소년쉼터 17.5점으로,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1.5점 낮았다.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응급 상황 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의 수 등 모든 지표에서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응급 상황 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동생활가정보다 평균 2.2명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과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 모두 조언자의 1, 2순위는 시설 선생님이었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 1순위도 두 체계 모두 시설 선생님이

표 7.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준비도

(단위: 명, 점)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x ²
		N	평균(SD), %	N	평균(SD), %	
원가족 교류	유	114	85.7	162	87.1	0.127
	무	19	14.3	24	12.9	
사회적 지지 총점		147	17.5(3.6)	215	19.0(2.6)	-4.224***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47	6.9(9.3)	214	8.8(16.5)	-1.268
	도움 요청	147	6.2(8.4)	214	7.7(11.9)	-1.395
	응급 시 금전 도움	147	3.2(6.7)	215	5.4(10.3)	-2.449*
	믿음, 용기	147	7.3(12.4)	213	8.3(14.8)	-0.668

***p < .001, **p < .01, *p < .05.

주: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의 각 지표에 대해서는 평균을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고, 재학 상태, 원가족 교류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함.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표 4-35).

응답하여 자립 과정에서 주 양육·보호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 자립서비스 욕구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 모두 1순위로 필요한 자립서비스로 각각 49.7%, 49.3%가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 지원이 높았는데 34.7%와 35.8%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필요 자립서비스 2순위에 대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두 체계 아동·청소년 모두 주거 지원으로,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36.7%,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이 39.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서비스는 두 체계 모두 경제적 지원으로 각각 18.4%, 30.7%를 나타냈으며,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서비스는 두

체계 모두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으로 각각 15%와 10.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필요 자립서비스 3순위에 대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 지원이 22.4%로 나타났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이 2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서비스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이 21.8%, 학업 지원이 12.2%로 분석되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건강 지원 18.6%, 학업 지원 14.4%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필요 자립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자립서비스 욕구

(단위: %)

지표	1 순위		2순위		3순위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경제적 지원	49.7	49.3	18.4	30.7	15.0	13.0
주거 지원	34.7	35.8	36.7	39.1	6.8	6.0
건강 지원	3.4	0.9	9.5	7.9	22.4	18.6
학업 지원	1.4	3.7	8.8	4.2	12.2	14.4
진로/취업/직업 지원	2.0	7.9	15.0	10.2	21.8	27.4
상담 지원	2.7	0.0	0.0	0.0	2.7	1.9
법률 지원	0.7	0.0	0.7	0.5	0.7	1.4
사회적 관계 지원	2.0	0.0	2.7	0.9	4.1	4.7
가족 관계 맺기 지원	1.4	0.5	2.0	0.5	2.7	4.2
문화·여가 활동 지원	0.0	0.9	3.4	2.3	3.4	1.9
자립생활 체험	0.7	0.5	0.7	0.9	2.0	1.4
선배 멘토링	0.0	0.0	0.0	0.5	2.7	0.5
자립서비스 정보	1.4	0.5	2.0	1.4	3.4	3.7
기타	0.0	0.0	0.0	0.9	0.0	0.9

자료: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6 재구성.

4. 나가며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체계는 다르지만, 보호체계 진입 이유, 자립 과정의 어려움과 욕구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 경험과 자립 준비도 결과를 보면, 두 체계 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준비 지원과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자립 준비도 수준도 아동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욕구를 가진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체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아

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 지원의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립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첫째, 자립 지원 관련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자립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성인)의 자립 지원을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자립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

하는 법률을 두고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면(제철용, 2020, 재인용, p. 355), 중앙부처의 담당 체계가 다르더라도 지역 단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령과 하위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공유,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호 기간 중 경제적 영역의 자산 형성,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자립 준비, 보호 종료 후 주거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후 관리 등 자립 지원의 핵심적 영역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둘째, 자립 및 자립 준비 지원 관련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 외(밖) 보호체계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아동·청소년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적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 서비스의 격차는 최초의 진입 체계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업무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 업무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팀)으로 다원화된 중앙 지원 기구 간의 실질적 협업 기반을 강구하거나 대상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구분하는 등 하나의 통합 지원 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 업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립 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 거점 통합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기구는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각 체계의 자립통합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당사자와 주 양육자 또는 주 사례관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 지역에서는 일선 시설 간의 정보와 자원, 사례 연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제도적·공식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동보호팀과 청소년안전망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장기간 가정 외(밖)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아동보호체제와 같이 입·퇴소에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지자체 내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혹은 위탁가정, 청소년쉼터 중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의 입·퇴소, 자립 지원과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광역 시·도-시·군·구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아동·청소년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영역별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관계 기반의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퇴소 또는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이 거주 지역과 보호체제에 상관없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과 보호 종료 후 자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9. 5. 23.).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522&page=1에서 인출.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 (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규. (2008).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청소년학연구, 15(4), 203-231.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 2019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d.).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제 구축 안내. <https://blog.daum.net/kyseog59/1984>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2020. 5. 11.).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bbtSn=707012에서 인출.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제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a).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b).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정은,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장혜림,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 정영철, 이야리, 류정희, 이기호, 유용덕, 김경준. (2014). 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방안 마련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문진,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 제철웅. (2020).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논총*, 37(1), 339-371.
-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2016 보호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Differences in Independent Living Services between Child and Youth Protection Systems and Policy Implications

Lee, Sang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eed of protection in Korea is operated separately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refore the content and quality of protection services are different, and the issue of segmentation and gaps in services constantly has been raised. Meanwhile, with regard to independent-living services as the last-stage child and youth protection, the issue of inter-ministerial gaps has been raised, bu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data to support this. Above all,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social attention given to how youth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prepared for independent living.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services and policies designed to support transition-age adolescents in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System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protected children and youth.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ducing gaps in independent living services.